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.
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,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,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(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),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,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,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,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.
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·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. [편집자 주]

I. 국가계약법 시행령

- 추정가격 10~50억원 미만 : 20일 이상 → 15일 이상
- *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: 33일 이상(변동 없음)

1.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(제42조④⑥~⑧)

현 행	개정안
○ 500억원 이상 PQ공사	○ 300억원 이상 공사

2. 내역입찰 대상공사 규모 상향조정(제14조)

현 행	개정안
○ 50억원 이상	○ 100억원 이상

공사입찰시 공사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

3. 공사의 현장설명제도 개선(제14조의2 신설)

-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현장설명 실시 의무화
- 현장설명 참가 의무대상공사 규모 상향조정
 - 50억원 이상 → 100억원 이상
- 현장설명 실시기간 단축
 -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: 10일 이상 → 7일 이상

4. 연대보증인제도 단계적 폐지 및 저가입찰시 보증이행 강화(제52조)

-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(300억원 이상 공사)에 대하여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
- 70% 미만의 최저가입찰 시 계약금액의 40% → 50%로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강화
- 연대보증제도 단계적 폐지에 맞추어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연대보증인 입보를 물적 보증으로 1회 한해 변경 허용(예 : ① → ② 또는 ③)
- ex) ① 계약보증금 10% + 연대보증인
 - ② 계약보증금 20%
 - ③ 공사이행보증서(40%)

5.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및 제재세부기준 위임 규정 등 보완(제76조)

법령과 고시 ②

- 정당한 이유 없이 저가심의대상자로 선정된 후 심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
- 감리업체의 감리원을 부당교체한 경우
- 위반행위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제한기간 및 가중(경감)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위임
-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 불가(기존 유권해석을 명문화하여 분쟁 소지를 제거)

II. 국가계약법 시행규칙

1. PQ대상공사 금액조정(제23조)

-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→ 200억원 이상

2. 입찰 무효사유 추가(제44조)

-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
-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의무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은 자 등

III. 국가계약법 회계예규

1. 하도급대금 직불과 선금정산의 우선순위 규정 보완(제37조 ③)

현 행	개정안
〈신 설〉	○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

-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을 포기한 계약상대자의 기성부

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하도급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토록 하여 연쇄부도 등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막고 하수급자의 권익 보호

※ 공사계약일반조건에 '97.1월 기 반영된 내용임

- 다만, 원도급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할 필요가 없어 제외

2.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조정(제33조 ③)

현 행	개정안
〈신 설〉	○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중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 이행중인 경우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토록 함

-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중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코자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적법하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토록 함

※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관련 회계통첩 (2002.11.19) 내용 반영

3. 공동계약 실적인정 규정 마련(제9조 ③)

현 행	개정안
〈신 설〉	○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별 실적 인정범위 마련 - 분담이행방식 : 구성원별 분담부분 - 공동이행방식 • 금액에 의하는 경우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•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(구분 곤란한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)

-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별 실적인정 범위 설정
- ※ 공동계약의 시공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칙(1992.12.26) 일부반영
- 공동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

4. 지수조정율 등 산출시 소수점 처리방법(제70조의2)

현 행	개정안
<p>〈신 설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수, 지수변동율 및 지수조정율(K)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고 넷째자리까지 산출하고 -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(예 :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)하여 결정

- 지수조정율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소수점 처리방법을 명확히 함
- ※ 유권해석 및 지수조정율 산출관련 회계통칙(1998.4.29) 내용 반영

5.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(제19조의2, 제19조의3, 제19조의5, 제19조의7, 제26조)

현 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

-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보고토록 하여 보고체계의 투명성을 확보
- 공사감독관의 보고지연, 미보고 등에 따른 문제점 해소
- ※ 청렴위원회 권고사항 반영

6.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보완(제20의 ①, ②, ⑨)

현 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〈신 설〉 ○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<p>〈신 설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-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○ 상호 협의라 함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는 것을 말함 ○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(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)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

- 우선시공을 하게 한 경우 설계변경당시의 의미를 명확히 함
-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에 대한 협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소지를 최소화함(유권해석 내용 반영)
- 계약금액조정 청구의 기한을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명확히 함(유권해석 내용 반영)

7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(제22조 ②, ③, ⑥)

현 행	개정안
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임의변경을 불허토록 함 ○ 준공대가(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)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○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한 경우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완요구 -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

법령과 고시 ②

현 행	개정안
	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청구서를 반송

- 계약금액 조정방법(품목조정율, 지수조정율)의 임의 변경을 불허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제도가 운용될 소지를 차단(유권해석 내용 반영)
-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기한을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명확히 함(유권해석 내용 반영)
- 조정기준일과 계약금액조정 청구일 사이에 지급된 기성대가의 물가변동적용대가 공제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계약금액조정 청구일을 분명히 함(유권해석 내용 반영)
- 보완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청구일 : 최초 청구일
- 반송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청구일 : 최종 재청구일

8. 지체상금 규정 보완 (제25 ①, ③, ④, ⑥)

현 행	개정안
<신 설>	○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연차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
<신 설>	○ 지체일수 면제사유(계약기간 연장사유)에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자재구입이 지연된 경우 추가
<신 설>	○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시공시 지체일수 미산입기간의 기산점(부도등이 확정된 날)의 의미를 분명히 함 *부도등이 확정된 날 : 부도, 파산, 해산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
	○ 공동계약의 경우 이행방식별로 부도등이 확정된 날의 기준을 명확히 함 *공동이행방식 :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 *분담이행방식 : 분담구성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
<신 설>	○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의 기산일을

현 행	개정안
	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준공기한의 다음날로 함

- 국가계약법시행령(§74 ①) 개정내용 반영
- ※ 유권해석 내용 및 규제개혁기획단(S/M) 의결사항
-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자재구입이 곤란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함
- ※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등에 관한 회계통칙(2004.3.6) 내용 반영
- 공동계약에 있어 부도등이 확정된 날의 기준은 연대책임을 지는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중 마지막 남은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고, 분담내용에 따라 자책임을 지는 분담이행방식은 분담구성원을 기준으로 함
- ※ 유권해석 내용 반영
- 준공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
- ※ 법제처 법령해석내용 반영

9. 대가지급 지연시 적용이자율 조정(제41조 ①)

현 행	개정안
○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적용	○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적용

- 국가계약법시행령(§59) 개정내용 반영
- 단, 연체이자율이 대출평균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계약상대자가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를 방지코자 이 예규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경과규정을 둠
- ※ 상기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
- 계약해제(해지)시 미정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(동예규 §44 ⑤)
- 공사정지기간(60일)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(동예규 §47 ④) ㉠